

건설안전특별법안
(윤종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802
----------	-------

발의연월일 : 2025. 12. 3.

발 의 자 : 윤종오 · 전종덕 · 황운하
임미애 · 최혁진 · 김재원
박수현 · 이재강 · 김준혁
손 솔 · 정혜경 · 민형배
이주희 · 한창민 의원
(14인)

제안이유

최근 5년간 공식적으로 집계된 건설현장 사망자 수가 1,200명을 넘고 부상자는 3만 명에 이르는 등, 건설산업이 여전히 가장 위험한 산업 중 하나로 남아 있음. 이는 드러난 숫자만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되며, 현행 제도로는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를 충분히 예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여러 법제의 제·개정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의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특히 다수의 주체가 복합적으로 얽혀 사고가 발생하는 건설산업의 특수성이 기존 법률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이에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건설현장 노동자 등 건설에 참여하는 각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별도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 단계에서부터 적정 공사비와 적정 공기 산정을 의무화하여 무리한 공기 단축과 이른바 ‘속도전’이 안전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하고, 발주자가 설계자·시공자·감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사전에 확인하며, 안전자문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등 발주자의 안전 책임을 강화함. 아울러 시공자와 하수급자에게도 공정별·단계별 안전의무를 명확히 부과하는 한편, 계약 이후 드러난 현장 여건으로 인해 공기가 불가피하게 늘어날 경우 공사비 조정을 협의할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공사비 조정이 정당하게 이뤄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명예건설현장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여 건설현장 노동자와 안전 전문가가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안전을 점검·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준수제도 평가 결과 등에 따른 포상·지원 및 공공발주 공사 입찰 시 가산점 부여 등을 통해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함. 이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구조적으로 줄여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발주자는 설계자등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시공·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

공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나. 발주자가 설계자·시공자·감리자와 해당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하도록 함(안 제9조).

다.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에게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라. 시공자가 감리자의 검토 결과 공사기간이나 공사비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연장이나 공사비용 인상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마. 감리자가 시공시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에 따라 시공자에게 재시공·공사중지 또는 시정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5항).

바. 시공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건설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20조).

사. 명예건설현장안전감독관 제도를 신설하며, 그 업무의 범위 등을 규정함(안 제26조 및 제27조).

아.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00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

련 업종·분야 매출액에 36,500분의 3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
(안 제37조).

자. 자율준수제도 평가 결과 등에 따른 포상·지원 및 공공발주 공사
입찰 시 가산점 부여 등을 통해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시키
고자 함(안 제41조 및 제42조).

차.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의 경우, 발주자
및 설계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3조).

건설안전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발주자, 설계자, 시공사 및 하수급시공사, 건설종사자 등 각 주체들이 이행하여야 할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건설사고의 위험을 낮추고 건설종사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설계도서(設計圖書)”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 가. 도면,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工事示方書), 내역서, 예정 공정표
 - 나.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부제도면
 -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 관련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건설사고”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4. “건설공사 참여자”란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발주자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선임하는 안전자문사

나. 설계자, 감리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다. 시공사·하수급시공사(이하 “시공사등”이라 한다)

라. 건설종사자

5. “발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4호의 따른 발주자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발주자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발주자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주자

6. “발주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

7. “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소방시설업자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업을 경영하는

정보통신공사업자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을 영위하는 국가유산수리업자

8. “주택건설등록업자”란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9. “시공자”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수급인(이하 “수급인”이라 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접 시공하는 건축주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라.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

마. 「전기공사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사업자

바.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시공하는 소방시설업자

사.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수급인

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10. “총괄시공자(수급인)”란 2명 이상의 수급자가 발주자와 공동도급 계약을 한 경우 발주자가 서면으로 지정한 수급인을 말한다.

11. “하수급시공자”이란 시공자로(하수급시공자)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재하도급)받고 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2. “도급”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
 - 나. 「전기공사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급
 - 다. 「소방시설공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급
 - 라.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제2조제12에 따른 도급 중 원도급
 -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급 중 국가유산수리 약정계약
13. “하도급”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하도급
 - 나. 「전기공사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도급
 - 다. 「소방시설공사법」 제21조에 따른 도급을 받은 자가 소방시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
 - 라.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하도급
 -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하도급
14. “건설엔지니어링”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5.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건설엔지

니어링 업무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6. “설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건설기술 중 설계와 설계에 수반되는 계획·조사·측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건축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설계자

다. 「주택법」 제33조에 따라 설계하는 자

라.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전기·소방·정보통신 등 설계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7. “감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다.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라. 「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

마.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전기·소방·정보통신 등 감리 또는 공사감리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8. “감리”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를 말한

다.

19.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20. “건설기술인”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방기술자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21. “건설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건설공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나. 임대,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가목의 건설공사의 근로자와 유사하게 시공사등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2. “안전시설물”이란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3. “무선안전장비”란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무선설비

및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의2호에 따른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건설 사고의 위험을 낮추는 기능을 갖춘 장비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이하 “안전관리”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설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참여자가 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에서 건설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의 승인, 건설공사 인·허가,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등 전 단계에 걸쳐 적절한 조치 등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건설공사 참여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 공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제25조에 따른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 결과
2. 제29조에 따른 부실벌점
3. 제30조에 따른 건설사고 신고 결과

4. 제31조제5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

5. 제33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건설종사자 재해보험·공제 가입 현황

6. 그 밖에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설계자·시공자·감리자(이하 “설계자등”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종합 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표를 개발하거나,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 평가 및 정보망 구축·운영을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 관련 협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 공개방법,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협조 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의무

제1절 일반 원칙

제7조(기본 의무) ① 건설공사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건설사고 예방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험성을 최대한 제거하고, 위험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위험성에 대해 근원적으로 대처한다.
3. 모든 작업에서 안전을 우선하여 고려한다.
4. 안전시설물 설치 등 공동의 작업 환경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위험에 관한 정보를 해당 위험 관계자와 공정 관리자에게 제공한다.
6. 건설현장과 그 주변은 사고발생 원인 제거를 위해 청결하게 관리한다.

② 건설공사 참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건설공사 참여자의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그 권한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2절 발주자의 안전관리의무

제8조(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한 업무 수행 등) ① 발주자는 설계자등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시공·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계자가 산정한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의나 검토의견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보건대장에 포함된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 관련한 검토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설계자가 산정한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에 대해 시공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검토의견을 받아야 한다.

1. 발주자가 발주청인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심의
2.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인가, 허가, 승인, 신고 수리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허가기관”이라 한다)의 장,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검토의견
3. 안전자문사의 검토 의견

③ 제2항에 따라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을 검토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의 심의 또는 검토 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설계자등에게 제공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의 심의 또는 검토의견을 받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2개 이상의 업체에게 분리하여 발주할 경우 각각 총괄설계자와 총괄수급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자에게는 총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 역량 확인의무 등) ① 발주자는 설계자·시공자·감리자와 해당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시공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하수급시공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가 감리자에게 감리업무를 맡기지 아니한 경우 발주자가 감리자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제10조(안전자문사 선임) ①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에게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이하 “안전자문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의 건설기술인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나 경력을 갖춘 기술인력을 보유한 자
2.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른 건축사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나 경력을 갖춘 자

3. 그 밖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나 경력을 보유한 자

② 발주자가 제1항에 따라 안전자문사를 선임하는 경우 안전자문사로부터 자문받은 사항을 인지하고 있음을 서명하고, 서명한 내용의 확인서를 건설공사 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 준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전에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발주청인 경우 서명한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사항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안전자문사는 발주자가 다음 각 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조언하여야 한다.

1.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발주자의 안전관리의무

2.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른 발주자의 의무나 역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공사 종류나 규모별 안전자문사 선임기준, 안전자문사의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절 설계자의 안전관리의무

제11조(설계자의 안전관리의무) ① 설계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 건

설계자가 안전한 작업 환경을 갖추고 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건설사고 예방에 필요한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물 등을 고려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 및 제63조를 준수하여 예정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의 협력을 받을 수 있다.

② 설계자는 건설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절 시공자등의 안전관리의무

제12조(시공자의 안전관리의무) ①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 설계도서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갖추고 시공하기에 적합한지를 착공 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과 공사비용
2.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물

② 시공자는 시공계획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안전관리 적정성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자는 감리자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시공자는 제1항의 검토 결과 공사기간이나 공사비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연장이나 공사비용 인상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주자는 시공자와 공사비용 조정 협상을 하여야 한다.

1. 발주자가 제8조제2항의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2. 도급계약 체결 이후 위험요인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

④ 시공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하도급을 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의 위험요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시공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하수급시공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시공자는 건설종사자가 제4조제3항에 따른 의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반복적으로 지키지 않아 건설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정상적인 작업 수행이 어려운 경우, 건설종사자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서면 시정 요구서에는 조치사항 위반 내용과 정상적인 작업 수행이 어려운 사유, 시정조치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 한다.

⑧ 제4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종사자가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시공자는 해당 건설종사자와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에게 해당 건설종사자를 작업에서 임시 배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단, 임시 배제시 건설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관리조직)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1.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3.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 담당자
4. 시공자, 하수급시공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5. 시공자가 직접시공하는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근로자위원 또는 현장 건설노동자들의 위임을 받은 자
6. 시공자가 직접 시공하지 않는 경우는 하수급업체별로 근로자 대표로 선출된 자 또는 현장 건설노동자들의 위임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안전교육)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시공자는 건설종사자를 대상으로 공법, 시공순서, 작업내용, 안전규칙,

건설공사 현장의 위험 요소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들어갈 필수적인 내용,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시공자의 시공단계에서의 안전관리의무) ① 시공자는 다수 공종의 사업자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물을 직접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 현장이 복수의 시공자로 구성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가 시공자의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해당 범위를 담당하는 시공자

2.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모든 시공자

③ 시공자는 같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둘 이상의 시공자등이 동시에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이 서로 방해되지 않도록 해당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④ 시공자는 제3항에 따른 조정을 시공자등이 이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⑤ 시공자는 건설사고 위험이 높은 가설(假設)·굴착(掘鑿)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감리자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현장의 안정성에 관한 확인을 받은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하수급시공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공자의 안전시설물 직접 설치 의무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하수급시공자의 안전관리의무) ① 하수급시공자는 시공자가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급시공자에게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하수급시공자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갖추고 작업을 하기에 공사기간이나 공사비용이 적정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③ 하수급시공자는 제2항의 검토 결과 공사기간이나 공사비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시공자로 시공자는 하수급시공자로 본다.

제5절 감리자의 안전관리의무

제17조(감리자의 안전관리의무) ① 감리자는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제1항의 검토 결과 건설사고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변경을 발주자 또는 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감리자는 공사 착공 전에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제출받고, 해당 내용의 안전관리 적정성을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④ 감리자는 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가설시설물, 안전시설물 등을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지 여부
2. 시방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이행하는지 여부

⑤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4항 각 호 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에 따라 시공자에게 재시공·공사중지(부분 공사중지를 포함한다) 또는 시정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자는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⑥ 감리자가 제5항에 따라 공사중지를 명한 경우 시공자는 그 명령에 따라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하며, 감리자는 시공자가 공사중지 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감리자의 공사중지 명령에 이의가 있는 시공자는 즉시 그 공사를 중지하고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라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감리자는 시정 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불이익 조치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제1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감리자의 조치를 이유로 해당 감리자의 교체, 업무 배제, 대가 지급의 거부·지체 등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

어서는 아니 된다.

② 감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7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조치를 함에 따라 발주자나 시공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감리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6절 건설종사자의 안전관리의무

제19조(건설종사자의 안전관리의무) ① 건설종사자는 제14조에 따른 안전교육에 성실히 임하는 등 건설종사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건설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의 주취상태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물건을 섭취·흡입한 상태
3. 의사의 처방전 없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시공자는 건설종사자를 작업현장에서 일시 배제할 수 있다. 단, 일시 배제시 시공자는 건설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공자, 발주자, 제13조제1항5호 및 제6호에 따른 근로자위원이

나 근로자 대표(위임을 받은 자 포함)가 협의하여 건설현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규칙을 수립한 경우 그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관리 활동

제20조(안전관리계획 등) ① 시공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의 건설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발주자의 경우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또는 감리자는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는 승인을 받은 안전관리계획과 그 검토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안전점검을 한 기관은 그 결과를 시공자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건설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받은 종합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 및 그 검토 결과,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점검 결과의 적정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할 수 있으며, 적정성 검토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공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⑨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출, 승인의 방법·절차, 안전 점검의 시기·방법, 대가(代價) 및 안전점검 기관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시공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출·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안전관리비) ① 발주자는 시공자에게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되, 이를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안전관리비의 항목 및 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 ① 건설공사 참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무선안전장비와 융·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이하 “스마트 안전관리”이라 한다)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스마트 안전관리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지원”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조·지원이 건설사고 예방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조·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2. 건설사고 예방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3. 보조·지원을 받은 자가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건설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보조·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조·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보조·지원의 대상과 절차 및 관리·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확인) ① 시공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관계전문가에게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② 관계전문가는 가설구조물이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의 종류, 관계전문가의 자격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안전관리 수준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청, 인허가기관, 시공자, 설계자 및 감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현장점검 및 건설사고 신고·조사

제26조(명예건설현장안전감독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명예건설현장안전감독관을 두어야 한다.

②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제1항에 따른 명예건설현장안전감독관(이하 “명예건설현장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명예건설현장안전감독관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명예건설현장안전감독관의 위촉, 해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령으로 정한다.

제27조(명예건설현장안전감독관의 권한) ① 명예건설현장안전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하 “근로감독관”이라 한다)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2.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 참석
3.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4. 사업장 출입 및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임시 작업중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보고
5.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6.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8.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9. 안전·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10.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

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보고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 상의하여 현장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임시작업중지는 제2항에 의한 조치가 이뤄지거나, 현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의 해제 결정에 의해 해제할 수 있다.

제28조(건설공사 현장점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해당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와 설계자등에게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3.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9조에서 제31조까지 같다) 및 인허가기관의 장

4.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다만, 국토안전관리원에게는 제1항의 시정명령 등의 조치 권한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 등을 점검한 시·도지사,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국토안전관리원은 점검 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나 요청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점검 결과 건설종사자의 안전과 관련되어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발주자의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사고나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그 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현장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그 점검 결과 및 조치 결과(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을 점검하는 자는 점검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그 건설공사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사전에 시기, 대상, 방법 등 점검계획을 공유하고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추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설계, 시공, 감리 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품질·안전 확보에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에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부실별점을 주어야 한다.

1. 제2조제9호에 따른 시공자
 2. 제2조제11호에 따른 하수급시공자
 3. 제2조제15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4.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
-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부실별점을 받은 자에게 건설엔지니어링 또는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부실별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 ③ 시·도지사,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실별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부실별점을 종합 관리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부실별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건설사고 신고) ① 시공자 및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는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정보망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고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시공자가 신고한 사항을 확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망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피해자 인적 사항
3. 사고발생 경위
4. 조치사항
5. 향후 조치계획

제31조(건설사고 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사고가 발생하면 그 원인 규명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사고의 원인 등을 조사하는 자(이하 “조사자”라 한다)는 다른 조사자가 조사한 결과의 제공을 해당 조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건설사고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현장에 대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규정된 건설공사 참여자가 이 법에 규정된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3. 건설사업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등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
4.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을 위반하여 하도급참여제한 중에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5. 건설사업자 또는 건축주가 아닌 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설계도서가 미흡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제3항에 따라 공사중지 명령을 받은 발주자 또는 시공사(수급인은 제외한다)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시공자등과 건설사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공사중지를 명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라 공사중지를 명한 자는 제4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과 그 검토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제3항에 따라 공사중지를 명한 자는 재발방지대책이 건설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공사중지를 해제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른 공사중지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인한 공사 비용 인상은 발주자와 설계자등의 과실 비율에 따라 각각 부담하여야 한다.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사전에 시기, 대상, 방법 등 조사계획을 공유하고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제32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건설사고(이하 “중대건설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건설사고의 원인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중대건설사고의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조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유사한 건설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건의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8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해당 공공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건설종사자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공제

제33조(건설종사자 재해보험·공제 가입 의무)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 중 소속 건설종사자가 업무상 재해(사망 또는 부상)를 입은 경우에 재해자(재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건설종사자 재해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자인 건설사업자는 하수급시공자가 가입한 보험·공제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하수급시공자 소속 건설종사자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장하는 보험·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보험·공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를 초과하는 범위의 손해에 대하여 보장하고, 건설사업자의 건설사고 이력 및 보장금액 등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산정되어야 한다.

③ 발주자와 시공자인 건설사업자는 보험·공제에 가입한 건설사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시공자와 하수급시공자의 보험료를 더한 금액의 2분의 1을 시공자에게 지급

하고, 시공자는 하수급시공자의 보험료의 2분의 1을 하수급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자의 등록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에 등록된 건설사업자가 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는지 매년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험·공제를 가입할 수 있는 기관, 가입절차, 보장범위, 보험료 산정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보험·공제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를 착공하거나 건설공사를 진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보칙

제35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시공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36조(영업정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사업자가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제20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사업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계자의 안전관리의무(제12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토가 완료되기 전 설계자의 업무에 한정한다) 또는 제17조제1항, 제3항에서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감리자의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계자의 안전관리의무(제12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토가 완료되기 전 설계자의 업무에 한정한다) 또는 제17조제1항, 제3항에서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감리자의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하도급인 경우는 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 30일이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사고 발생 일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공사의 경우는 계속할 수 있다.

제37조(과징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00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업종·분야 매출액에 36,500분의 3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산정방법,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재정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38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관련 협회, 건설기술 또는 시설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3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32조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3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탁한 공공기관, 협회 및 건설기술 또는 시설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그 위탁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제40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1조(자율적 안전관리 문화의 확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현장의 안전을 도모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자율안전관리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설안전과 관련된 법률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하여 내부준법제도(이하 “건설안전 자율준수제도”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상황에 대하여 평가(이하 “건설안전 자율준수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건설안전 자율준수평가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안전 자율준수평가를 신청한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안전 자율준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설안전 자율준수평가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 결과 등에 근거하여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의 공공기관등이 발주

하는 건설공사 입찰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건설안전 자율준수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의 포상·지원 및 가산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건설안전 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안전 관련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안전 자율준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건설안전 자율준수평가에 관한 업무(이하 “평가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 기간 중 평가업무를 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업무를 거부한 경우
4. 파산 또는 폐업한 경우
5. 그 밖에 휴업 또는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건설공사 참여자의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한 자
 2.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발주자
 3.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설계자(제12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토가 완료되기 전 설계자의 업무에 한정한다)
 4.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하거나 제17조제6항을 위반한 시공자
 5. 제16조제1항을 위반한 하수급시공자
 6. 제17조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7항을 위반한 감리자
-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공자
2.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제출·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시공자

2. 제20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시공자
3.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의 확인 없이 가설구조물을 설치한 시공자
4. 제24조제2항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가설구조물이 붕괴되어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관계전문가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착공한 시공자
2. 제28조제1항에 따른 점검이나 제29조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31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46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 및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검토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4항을 위반하여 설계자등에게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지 아니한 발주자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하지 아니한 발주자
3. 제20조제6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시공자
4. 제20조제9항을 위반하여 설계도서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지 아니한 자
5.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산정·지불하지 아니한 발주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다른 안전관리비 항목과 다르게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시공자
6.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지 아니한 시공자
7.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한 자

8.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종사자 재해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9.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착공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발주자

2. 제20조제9항을 위반하여 설계도서에 대한 안전성 검토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의 결과 및 조치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점검자

4.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사고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5.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고 사실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설기술 진

흥법」 제62조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은 제20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으로 본다.

제3조(소규모안전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의2에 따라 수립된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은 제21조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으로 본다.

제4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처분절차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행정제재처분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제8호 중 “제53조”를 “「건설안전특별법」 제29조”로 한다.

제31조제2항제6호 중 “제54조제1항”을 “「건설안전특별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39조의2제3항 중 “제62조”를 “「건설안전특별법」 제20조”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제62조”를 “「건설안전특별법」 제20조”로 한다.

제53조, 제54조,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67조 및 제 6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0조제3호, 제84조제4호, 제88조제7호·제7호의2·제8호·제9호, 제89조제5호·제5호의2·제6호, 제91조제2항제3호·제3호의2·제3호의3·제4호, 제91조제3항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법률 제17939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를 삭제한다.

제62조의3을 삭제한다.

③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제6호가목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을 “「건설안전특별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82조제1항제6호라목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2항”을 “「건설안전특별법」 제20조제2항”으로 한다.

제82조제1항제6호마목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80조”을 “「건설안전특별법」 제35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80조”로 한다.

④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를 “「건설안전특별

법」 제20조”로 한다.

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를 “「건설안전특별법」 제13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를 “「건설안전특별법」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⑥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2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를 “「건설안전특별법」 제28조”로 한다.

⑦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5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를 “「건설안전특별법」 제28조”로 한다.

⑧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를 “「건설안전특별법」 제29조”로 한다.

⑨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나목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 또는 제80조”를 “「건설안전특별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35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80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를 “「건설안전특별법」 제20조”로 한다.

제54조제1항제2호가목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를 “「건설안전특별법」 제29조”로 한다.

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건설기술 진흥법」”을 “「건설안전특별법」”로 하고, “같은 법 제62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⑪ 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품질관리 확인”을 “「건설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품질관리 확인”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